

P.16

-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좋아졌다. (×)

풀이 국제회계기준은 규칙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의 회계원칙이다. 즉, 국제회계기준은 재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산절차나 방법 등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기존에 규칙중심의 회계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던 동일 국가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삼성전자와 노키아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좋아졌다. (○)

풀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회계정보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제각각 자국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던 것이 국제회계기준으로 통일되었으므로 다른 나라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P.18

- 개념체계는 GAAP이다. (X)
풀이 개념체계란 GAAP 제정기관(IASB)이 GAAP을 제정,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적 틀을 말한다. 따라서 개념체계 그 자체가 GAAP인 것은 아니다.
-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GAAP보다 개념체계를 우선 적용한다. (X)
풀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GAAP)에 우선하지 않는다.
-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개념체계를 참조하는 경우는 없다. (X)
풀이 특정 거래 등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GAAP)이 없는 경우 개념체계는 그 다음 순위로 적용하는 지침이 된다.

P.20

- 독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X)
풀이 독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bias)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독립적 정보가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의상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서술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X)
풀이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술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21

-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의 점추정치이어야만 한다. (X)
풀이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의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X)
풀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면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정보이용자를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 이해가능성은 GAAP을 모르고 있는 정보이용자에게도 적용되는 질적 특성이다. (X)
풀이 이해가능성이란 사업 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P.35

- 자본유지개념은 이익 측정의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
- 명목화폐단위이든 불변구매력단위이든 재무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개념체계에서는 역사적원가나 현행원가 등 특정 측정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모형은 측정기준을 역사적원가로 하고, 자본유지개념을 명목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재무자본유지개념으로 하는 모형이다. (○)

P.54

-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표시한다. (X)

풀이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 기업이 환경보고서, 부가가치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X)

풀이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P.58

- 기업이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채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한다. (X)

풀이 기업이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P.65

-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X)

풀이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O)
-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최초 원가와 후속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O)

P.68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즉시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원가 전체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이 때 구건물의 철거비용(폐자재 매각대금이 존재하면 차감)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O)

P.80

-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O)
- 중단기간에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O)
-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O)

P.81

-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 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O)

P.82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각 구분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
-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경미한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원가를 함께 감가상각한다. (×)
풀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경미한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전액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
풀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제조원가의 일부이므로 발생시 제품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키고, 향후 동 제품이 판매될 때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한다.
-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
풀이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P.84

- 원가모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회사가 재평가모형을 처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소급법을 적용한다. (×)
풀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평가모형을 최초로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법 적용을 배제한다.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던 회사가 원가모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소급법을 적용한다. (○)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매년 재평가를 해야만 한다. (×)
풀이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매년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당해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
-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재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의 혼재된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재평가한다. (○)
-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

P.90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
풀이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는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추정해야만 한다. (×)
풀이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추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 한 가지 측정치만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P.91

-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는다. (○)

P.92

-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 인식할 때 우선 영업권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이후 다른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서 감소시킨다. (×)
풀이 우선 영업권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이후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서 감소시킨다.

P.94

-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손상차손(비용)을 감소시킨다. (×)
풀이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즉,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P.98

- 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운용리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X)

풀이 연결재무제표 하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자가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당해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P.99

-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X)

풀이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을 유의해야 한다.

P.103

-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원양어업, 천연림의 벌채)은 농림어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매각부대원가가 많다면 최초 인식 시점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O)
-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 이후에는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며, 당해 자산에 적용되는 다른 기준서를 준용할 것이므로 최초 인식시점 이후의 순공정가치 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O)
-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O)

P.105

- 특정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가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
-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CD)에 담아서 구입했다면 CD가 물리적 형체가 있으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 풀이** 유형과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 판단하여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결정한다.
- 자가창설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 풀이** 자가창설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매입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 풀이** 매입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P.106

- 기업이 숙련된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숙련된 기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 풀이** 기업이 숙련된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숙련된 기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더라도 그러한 종업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 기업이 보유한 숙련된 종업원의 기술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므로 무형자산이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인식할 수 없다. (×)
 - 풀이** 기업의 숙련된 종업원의 기술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이 될 수 없다.
-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P.107

-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회사가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사업결합 전에 피취득회사가 그 자산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당해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 사업결합을 통해 무형자산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

P.109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유사한 항목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 상업적 생산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과 관련된 비용은 자산인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무형자산인 개발자산으로 계상한다. (×)

풀이 상업적 생산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는 개발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제품제조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상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하는 경우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개발단계의 자산인식요건이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

풀이 웹 사이트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웹 사이트 개발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개발단계의 자산인식요건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지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P.110

-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
- 무형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내용연수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

P.121

- 만일 재고자산의 매입단가가 변동이 없다면, 원가흐름에 관한 어떠한 가정도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 만일 재고수준이 매 회계연도 말에 0이 된다면, 선입선출법 하의 매출원가가 가장 낮게 계상된다. (×)

풀이 매년 기초 및 기말재고금액이 0이 되므로 원가흐름의 가정과 상관없이 매출원가는 항상 매입액과 동일하게 된다.

- 재고감모가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의 원가흐름가정 적용시 계속기록법을 하든, 실지재고조사법을 하든 기말재고금액은 동일하다. (○)
- 평균법의 원가흐름가정 적용시 계속기록법을 하는 경우와 실지재고조사법을 하는 경우 기말재고금액은 항상 다르다. (×)

풀이 매입단가의 변동이 없거나 매출 이후의 매입액이 없다면 기말재고금액은 동일하다.

-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면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해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

풀이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성격과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P.132

- 창고비 등 재고자산의 보관비용도 매입이나 생산과정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시킨다. (○)
- 매입이나 생산 완료 후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전까지 단순히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
-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가산한다. (×)

풀이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P.133

-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풀이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도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P.166

- 기대신용손실은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그 예상시기가 계약상 지급 시점보다 늦다면 신용손실이 발생한다. (○)
-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
-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 기대신용손실은 현재가치 측정치인데,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유효이자율이나 이에 근사한 이자율로 보고기간 말에 기준으로 할인하며, 예상되는 채무불이행 발생일이나 그 밖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인하지 않는다. (○)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다. (○)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실충당금을 추가로 인식하였는데 이후 그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회수불능 확정액만큼 금융자산을 제거하면서 이미 인식한 손실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다. (○)

P.182

-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는 금융부채에 해당된다. (X)
풀이 과세당국에 납부할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제무가가 존재하여 인식한 충당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된다. (X)
풀이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는 의제무도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선수수익이나 선수금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P.188

-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 할인발행되면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하고 할증발행되면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X)
풀이 할인발행되면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할증발행 되면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 사채발행차금을 정액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 장부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 (X)
풀이 사채발행차금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장부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유효이자율)은 매년 감소한다.
-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에 따른 사채발행차금의 상각(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O)

P.189

- 사채발행 시점에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높다. (O)
풀이 사채발행비가 발생할 경우 액면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발행가액이 차감되므로 이를 반영한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항상 높게 된다.
- 사채발행비는 사채 만기까지 매년 이자비용에 추가되어 인식된다. (O)

P.227

- 현재의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면 현재의무가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
- 의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
-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
- 기업의 미래행위(즉, 미래 사업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 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규안대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 ▶ 풀이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판단할 때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

P.228

-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 검토 결과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우발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 ▶ 풀이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이는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며, 일반적인 자산 인식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우발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P.229

-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하다면 당해 범위의 중간값을 사용한다. (○)
- 불확실성을 이유로 과도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거나 부채를 고의적으로 과대표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
-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

P.230

-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
풀이 변제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때에 한하여 예상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 전체 의무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므로 예상변제금액의 자산 인식금액과 충당부채를 상계표시하지 않는다. (○)
-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

P.231

- 미이행계약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풀이 미이행계약은 아직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미래 손실액을 비용 및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

- 기업이 매각의 이행을 약정하기 전까지 즉,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사업매각과 관련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총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영업손실은 총당부채로 인식한다. (○)
 - 구조조정 일환으로 관련자산을 매각할 때 예상처분이익은 구조조정총당부채를 측정하는데 반영한다. (×)
- 풀이** 총당부채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산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총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일환으로 관련자산을 매각할 때 예상처분이익은 구조조정총당부채를 측정하는데 반영하지 않는다.

P.237

- 한 기업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모두 발행할 수 있다. (X)
풀이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인식될 수 있다. (X)
풀이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 중 1/2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때 발행가액에서 자본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인식될 수 없다.
- 전환우선주는 복합금융상품이다. (X)
풀이 전환우선주는 부채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복합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전환권을 행사해서 발행되는 보통주의 주식수가 변동가능하다면 전환권이 부채요소가 되어 복합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다. 본 해답은 전환권을 행사해서 발행되는 보통주의 주식수가 확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복합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작성된 것이다.

P.238

- 무상증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X)
풀이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 주주는 무상증자로 주식을 수령하더라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보유 주식의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비망기록만 하면 된다. (O)
풀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는 보유 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주식의 주당 가치는 하락하므로 주주의 부는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는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수령하더라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보유 주식의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비망기록만 하면 된다.

P.240

- 주식배당은 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X)
풀이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 주주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수령하더라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보유 주식의 단가를 하향조정하는 비망기록만 하면 된다. (O)
- 전환우선주는 전환권이 존재하므로 전환권의 가치를 계산하여 전환권대가를 인식한다. (X)
풀이 전환우선주에는 부채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복합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우선주의 발행시 일반적인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전환권대가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우선주자본금과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만 인식한다.)

- 감자는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에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X)

풀이 실질적 감자는 유상감자, 형식적 감자는 무상감자를 의미한다. 무상감자의 경우 감자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P.242

-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면 우선주자본금은 감소한다. (X)

풀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이후 상환절차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자기주식과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한다. 왜냐하면 상법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는 것이지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면 자본은 불변이다. (X)

풀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상환우선주를 이익 소각으로 상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한다.

P.250

- 현금배당을 한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만, 현물배당을 한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X)

풀이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현물배당에 대해서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을 한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X)

풀이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다.

P.305

- 누적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
풀이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
풀이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P.322

-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지방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
풀이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
-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한 해고나 의무적인 퇴직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급여는 해고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
- 종업원 요청에 의한 해고로 인해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인해 지급된 더 많은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

P.345

- 주식선택권이 채부여특성을 가지는 경우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채부여특성을 고려한다. (×)

풀이 주식선택권이 채부여특성을 가지는 경우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채부여특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사후적으로 채부여주식선택권이 부여될 때 당해 채부여주식선택권을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P.362

- 영업권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순환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권은 일시적차이로 보지 않는다. (×)

풀이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향후 손상인식과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즉, 영업권은 일시적차이로 본다.) 그런데 영업권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순환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결합시 인식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있어야만 변동한다.(×)

풀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① 세율이나 세법이 변동되는 경우
- ②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 ③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 기업이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유동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풀이 기업이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세법처럼 과세소득의 수준별로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한계세율을 사용한다. (×)

풀이 과세소득의 수준별로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평균세율을 사용한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

-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

P.376

- 기업이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옵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반희석효과가 있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X)

풀이 기업이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옵션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희석효과가 있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기업이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옵션을 매도하여 보유하는 경우(매도풋옵션, 매도콜옵션 등)에는 해당 계약이 희석효과가 있다면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반영한다.

- 매도풋옵션과 선도매입계약과 같이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약이 희석효과가 있다면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반영한다. (O)
- 단순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등의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보지 않는다. (O)
-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보통주로 간주하지 않고,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O)
- 회계기간 중에 주식수가 변동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이 없다면 주식수가 변동된 날부터 가중평균하지 않고, 당해 기간 및 비교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O)
- 기준서에서 기본주당이익 계산시 분모의 보통주식수 가중평균은 월수에 기초하여 하되, 합리적 근사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X)

풀이 기준서에서는 일수에 기초하여 가중평균을 하되, 합리적 근사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당기에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고 조정주식수를 계산한다. (O)
- 조건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가득되지 않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미래 가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옵션으로 보며,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O)
- 성과조건이 부과된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시간의 경과 외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생되기 때문에 조건부발행보통주로 취급한다. (O)
-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에서 결제방법의 선택권리가 보유자에게 있는 경우 현금 결제로 선택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X)

풀이 결제방법의 선택권리가 보유자에게 있는 경우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P.386

- 외화는 표시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한다. (×)
풀이 외화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한다.
-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한다. (×)
풀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 표시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법을 적용한다. (×)
풀이 표시통화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변경 후의 표시통화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즉 소급법을 적용한다.
-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다. (×)
풀이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P.418

- 기능통화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한다. (X)

풀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하다가 재평가모형을 최초로 적용할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소급법을 적용한다. (X)

풀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다가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도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나, 이는 기준서 제1008호 '회계변경,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준서 제1008호 '무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회계정책변경은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 무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다가 최초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소급적용을 요구한다면 비교표시되는 과거연도의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일일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유,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최초로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최초 적용시점부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다가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O)

P.420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X)

풀이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원가로 측정하던 거래를 공정가치로 측정기준을 변경했다면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구분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X)

풀이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P.443

- 법인세 현금유출 총액은 항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X)
풀이 법인세 현금유출 중 명백히 투자·재무활동 관련된 것은 투자·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 FVPL 금융자산을 단기매매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X)
풀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성자산에 속하는 채무상품을 취득하는 것은 투자활동 현금유출이다. (X)
풀이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성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현금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 선급금의 지급은 항상 영업활동 현금유출이다. (X)
풀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선급금은 영업활동이고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선급금은 투자활동이다.
- 금융기관(은행)의 대출채권은 영업활동이고 상기업, 제조기업의 대여금은 투자활동이다. (O)
- 사업결합 시 영업권의 취득은 영업활동이다. (X)
풀이 영업권(무형자산)의 취득은 투자활동이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현금유출은 재무활동이다. (O)
- 이자수취와 배당금수취는 항상 영업활동 현금유입액이다. (X)
풀이 이자수취와 배당금수취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이자지급과 배당금지급은 항상 재무활동 현금유출액이다. (X)
풀이 이자지급과 배당금지급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유출액은 재무활동이고, 리스료 중 이자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O)
-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계약에서 수취하는 리스료는 영업활동 현금유입액이다. (O)
-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수취하는 리스료는 투자활동 현금유입액이다. (X)
풀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수취하는 리스료 중 리스채권 회수부분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이자수익 해당부분을 영업활동(리스를 주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일 경우)으로 분류한다.
-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은 항상 영업활동이다. (X)
풀이 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은 항상 재무활동이다. (X)
풀이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주식기준보상에서 발생하는 보상비용은 항상 재무활동이다. (X)
- 풀이 주식결재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용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현금결재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으로 인해 인식되는 이자비용은 항상 재무활동이다. (O)
-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O)
- 미수금은 투자활동이고, 선수금은 영업활동이다. (O)
- 미지급금은 항상 재무활동이다. (X)
- 풀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지급금(문방구류의 외상 구입 등)의 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미지급금의 지급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P.448

-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
- 비화폐성자산으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로 보조금과 자산을 회계처리한다. (○)
-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구분한다. (○)

P.453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중단영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단영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해당된다. (○)
- 당기에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구분표시 하더라도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상태표는 매각예정의 분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급 재수정을 하지는 않는다. (○)

P.457

- 직전 연차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연차재무제표만 작성하였다면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나,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미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면 이후 중간기간에 이를 환입할 수 없다. (○)
-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지 않는다. (○)
-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및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